

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

[철원우체국 공고 제 2023-01호]

철원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(예정) : 2023. 5. 1.(월)
2. 국고귀속대상 : 30건, 20,460원
◎ 국고귀속 범위 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
(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)
3. 환급기간 : 2023. 04. 11.(월) ~ 2023. 04. 28.(금)
4. 환급장소 : 철원우체국 영업과
5. 환급청구시 구비서류
 - 가.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 및 영수증서 (계약자 인감 날인) 1부
 - 나. 통신판매 회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- 다. 실명확인증표 (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 / 개인 : 신분증)
 - 라. 회원 본인 및 법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-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- 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우체국 취미우표 담당(033-450-3120)에게 연락바랍니다.

2023. 04. 11.

철 원 우 체 국 장